



보도자료



2015년 1월 27일 (화) 14시 이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 김정렬 과장 (☎2110-1320)
최윤정 사무관 (☎2110-1321)

방송통신위원회, “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” 발표

- ▷ 재허가·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재난방송을 개선하는 등 공적 책임 제고
- ▷ 칸막이식 광고규제에서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, 가상·간접광고 규제도 완화하여 방송 콘텐츠 투자기반을 확충
- ▷ 한류 재도약을 위해, 중국·아세안 등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·포맷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, 공동 제작을 통한 우회진출에 노력
- ▷ 요금·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, 인터넷 상 개인정보 보호 철저
- ▷ 직권조정 등을 통해 지상파·유료방송 간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, 유·무선 및 방송·통신 간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 조사

- 방송통신위원회 (위원장 최성준)는 1월 27일 (화), “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”을 발표하였다.
- 금번 업무계획은 작년 8월에 마련된 “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”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4명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.

- 올해는 그간 논의된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두고, ① 방송의 공적 책임,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, ② 방송 서비스 활성화 :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, ③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.

① 방송의 공적 책임,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

- 방송 사업자 (지상파 방송, 종편·보도 PP)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事前에 충분히 인지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,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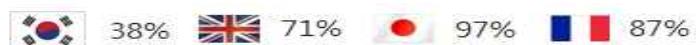
※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, 방통위의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,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정임

-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고,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·절차 등을 개선하여 사전동의 내실화
- 세월호 참사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·교육 의무를 부과하고,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^{주1)}, 방송평가지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

주1)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 (현재 입법예고, 관계부처 협의 중)

-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는 한편, 유희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

수신료 비중 (2012)



-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,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

② 방송 서비스 활성화 :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

-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^{주2)}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(미래부 협력), 다채널 방송인 MMS^{주3)}는 EBS의 초·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

주2) Ultra High Definition : 현재 HD TV 보다 4~16배 선명

주3) Multi Mode Service : 1개 채널에서 2~3개의 채널을 제공

- 광고 축소 ⇒ 콘텐츠 후퇴 ⇒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 (프로그램광고, 토막광고, 자막광고, 시보광고) 별 칸막이 규제를 걷어내어 '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'를 도입하고, 가상·간접 광고규제를 완화 [유료방송 경우 허용시간 (現 5/100) 확대, 가상광고는 허용범위도 확대 (現 스포츠경기 + 교양·오락·스포츠보도)]

방송광고 시장 '11년 3.7조원 ⇒ '12년 3.6조원 ⇒ '13년 3.5조원 ⇒ '14년 3.4조원(추정)

- 이러한 광고제도 개선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,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
-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역 진출을 지원
 - 중국 경우에는 한·중 FTA 후속조치로서 '공동제작 협정' 체결에 노력하고, 방송사 간 드라마·다큐 (역사, 환경) 등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며, 한·중 라운드 테이블의 정례화도 추진
 - 아세안 등의 경우 EBS 모델의 컨설팅을 통해서 태국 및 대만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, 한-아세안 방송 서밋을 제안
- SO·IPTV·위성방송이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, 집에서 TV로 실시간 방송만을 보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스마트폰 및 VoD까지 포함시켜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(하반기)

- 방송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초·중·고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영상물 제작·기획·편집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
-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액 출연료·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외주제작사의 제작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'외주제작 인정기준' 개정을 추진

[참고] 대통령 말씀 ('2015. 1. 15)

- ▶ 대표적 한류상품인 방송 콘텐츠의 지평 확대를 위해 자원, 인재, 유통채널 확보 등 필요한 정책들을 잘 마련해야 함.
- ▶ 콘텐츠는 그 자체가 훌륭한 수출상품이면서, 패션·식품 등이 동반진출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 제고 상품임.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함

③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

-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고 (지원금 수준, 번호이동 추이 + 단통법 준수여부, 리베이트 수준, 신규·기변 실시간 파악),
-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(주말·야간 연락 체계 구축),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
- 유·무선 및 방송·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, 허위·과장 광고를 철저히 점검
-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,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(방송법 개정),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 조사

[참고] 방송법 개정안 (현재 법제처 심사 중)

- ▶ 직권조정 : 시청자 이익 침해 우려 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
- ▶ 재정제도 : 올림픽·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관련 분쟁의 경우 방통위가 '준사법적 절차'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제시
- ▶ 방송 유지·재개 명령권 : 방송중단 임박 시 명령 발동 (30일 내)

-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분야 (온라인·선불폰 영업점, TV홈쇼핑, 내비게이션),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 (포털, 불법 텔레마케팅)를 점검하고, 유출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 이행을 사후 관리하는 한편
 -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및 업종별 (쇼핑, 통신 등)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
- 위치정보 주요 사업자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, 활성화 계획 마련
- 이통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S/W (스마트 안심드림)의 보급을 확대하며 방심위에서 국제테러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, 신속한 접속차단 실시

□ 방통위는 앞으로도,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,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한편,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.

□ 특히,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,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.

< 붙임 >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